

② 건강 지원

[시민건강국]

- 1. 난임 시술비 지원 통한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 2.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 3.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4.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이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1 난임 시술비 지원 통한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건강과 : 채명준 ☎2133-7560 팀장 : 이미점 ☎7576 담당 : 강희자 ☎7577

초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 대상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임신·출산을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 사업내용
 - (시술 선택권 보장)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로 총 22회 횟수 내 시술비 지원
 - (시술비 지원) 여성 나이별, 시술별 1회당 상한액 지원

지원대상 (시술 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 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소요예산('23년) : 22,158백만원 (시비 65%, ※ 구비 35% 별도)
 - (당초 예산) 11,610백만원 / (하반기 난임지원 확대 추경예산) 10,548백만원

□ 추진실적('23.7월말 기준)

'23년도 목표	현재 실적('23.7.31 기준)	연말 예상실적
49,000 건	16,770 건 (목표대비 34.2%)	49,000 건 (목표대비 100%)

※ '23.7.1.~7.31. 2,924건(확대 시행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5,301건

※ 임신건수: 2,908건(임신성공률 17.3%)

□ 향후계획

- 난임지원 기준 검토 전문가 자문단 구축·운영 : '23. 8월
 - 난임지원 기준 예외기준에 대한 적극 검토를 통한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 자치구별 추진현황 점검 : '23. 9월

2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스마트건강과 : 채명준 ☎2133-7560 팀장 : 이미점 ☎7576 담당 : 김은혜 ☎9687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에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관리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가임기 남녀
- 사업내용
 - 임신 위험요인 조사(99문항) 및 등록 평가
 - 임신 전 엽산제 제공(남녀 각 3개월분), 검진 실시(일반검진, 생식기능검사)
- 소요예산('23년) : 1,597백만원 (시비 100%)

□ 추진실적('23.7월말 기준)

- 모니터링단(용역) 공모 선정 : '23. 3.
 - 25개 자치구 보건소 사업 수시 모니터링 및 기술 지원
- 남성검진기관 신규 모집, 2개소(총 26개소) : '23. 4.~6.
- 자치구 사업 담당자 및 실무자 교육 : '23. 5.
- 세부 추진실적

사업 참여구	참여자수 (설문·평가)	엽산제 (3개월분)	일반검진 (이상자수)	생식검사 합계	생식기능검사수		전문의료기관 연계 권유 (비율)
					정액검사 (이상자수)	난소기능검사 (이상자수)	
25	16,675	14,514	13,381 (6,185)	12,416 (3,360)	4,740 (1,271)	7676 (2,089)	27%

□ 향후계획

- 자치구 담당자 교육 : '23. 8.말
- 자치구 보건소 현장 모니터링 : '23. 10.
 - 25개 區 보건소 방문, 지원사항 모니터링 및 자치구별 특성 고려한 기술지원

3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스마트건강과 : 채명준 ☎2133-7560 팀장 : 이미점 ☎7576 담당 : 문숙명 ☎7578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 사업대상 :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최대 95% 지원
 - ▶ 서비스 비용 : 132,800원/1일(단체 첫째아 기준), 소득·태아 유형 등에 따라 상이
 - ▶ 비혼모·저소득 출산가정은 서비스 비용 기본 지원 외 본인부담금의 90% 추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지원 : 영양, 위생관리, 가사활동 지원(식사, 세탁, 생활공간 청소 등)
- 신생아 지원 : 수유, 위생, 예방접종 지원 등

- (지원기간) 단체·첫째아 기준 5 ~ 15일(선택), 일 9시간 주 5일

- 소요예산('23년) : 25,336백만원(시비) ※ 구비 25% 별도 편성

□ 추진실적('23.7월말 기준)

- 서비스 지원 : 14,500명, 취약계층 본인부담금 지원 : 113명
- 지정 제공인력 교육기관 현장점검 및 관리(서울시) : 22개소
-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관리(25개 자치구) : 291개소

□ 향후계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속

4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이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식품정책과장 : 정진숙 ☎2133-4700 팀장 : 김능희 ☎4737 담당 : 차승미 ☎4742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등)가 있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맞춤형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복지부)
-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72개월까지) 중 영양위험군
※ 영양위험군: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불량, 기타 영양위험요인(임신성 당뇨 등)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주요내용
 - 영양문제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영양교육(월 1회) 및 상담(수시)
 -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 보충을 위한 식품 꾸러미 제공(월2회)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영양상태평가(6개월 기준)
- 소요예산('23년) : 3,671백만원(국 1,754, 시 1,917) ※ 구 50% 별도

□ 추진실적('23.7월말 기준)

- 사업 수혜자: 연 누적 8,793명(월평균 5,748명)
 - 영아 2,551명(29%), 유아 4,094명(47%), 임신부 678명(8%), 출산부 1,470명(17%)
- 대상별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연 12,264명, 가정방문 944가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회의 2회
-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보충식품(농산물) 안전성 검사 2회, 보충식품 공급 업체 점검 1회 ※ 모두 적합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 연중
- 자치구 담당자 회의 및 교육, 보충식품 안전성 검사 : 분기별
- '24년도 보충식품 공급 업체 선정 : '23. 12.